



##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정부는 7월 17일 관보를 통해 신고리 5·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·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리 원전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발령했다. 국무총리훈령 전문을 게재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신고리 5·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대한 주요 사항
2.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관련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3.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위원은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 단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屬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, 공론화 결과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,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.

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자문위원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,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조사·연구 의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여론의 수렴)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2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·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은 위원회가 해산한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하여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. 🍌